

‘강제징용’ 가주항소법원 “국제조약에 위배” 제류증인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해 1월 초 헤이든 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1차 심리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앞으로 남은 소송과정이 크게 불리해지게 됐다.

이에따라 헤이든 법을 토대로 LA 민사법원에 계류증인 강제 징용 관련 케이스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951년 국제조약에 따라 2차대전 전범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종결됐으며 따라서 전법문제가 미

국 영토 안에서 다시 대처되는

것은 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기주보험법안(HVIRA)의 유현심리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연방대법원은 2차대전 당시 유럽지역에서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수혜자 이름과 주소, 보험 구입자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가주법은 외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현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951년 국제조약에 따라 2차대전 전범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종결됐음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상대 보상 속속 기각

이번 법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가주법이 내린 일본계 기업 노다 시멘트사를 상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했던 정재원씨의 케이스 기각명령 거부 판결을 무효처리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것을 명령했다.

제 2 순회 가주항소법원은 지난 30일 1990년 기주에서 제정된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

이 나오자 일본기업측은 헤이든 법도 정치외교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주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주대법원은 항소법원에 헤이든법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하고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신혜원 변호사는 “주대법원에서 이미 케이스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라 항소할 경우 체택할 자가 미지수”라며 “특히 항소법원에서 이미 2번이나 심리한 케이스라 항소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연희 기자